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30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유장미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505357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9. 10. 23. 접수

제101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A’을 ‘A’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20. 3. 24.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갑 제4,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강원도 정선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175,665,81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9,129,742원 상당,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A에게 현금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당시 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A이 2019. 7. 말경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2019. 3. 경부터 2019. 6. 경까지 A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도과한 후 수차례 변제 요구를 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대여 당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A의 재산상태가 나빠지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30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이를 대여하였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권혁준, 판사 박미선

1. 강원 정선군 D 입야 16,433㎡

2. 강원 정선군 E 대 621㎡

3. 강원 정선군 F 대 550㎡

4. 강원 정선군 F, E G동

 [도로명주소] 강원 정선군 H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65.14㎡, 2층 59.42㎡

5. 강원 정선군 F, E I동

 [도로명주소] 강원 정선군 H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창고시설 10.8㎡. 끝.

